

성폭력은 사회적 위력을 지닌 자에 의해 사회적 위력을 갖지 못하거나 약한 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장애를 갖지 않은 여성에 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발생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80년대 말부터 불어온 민주화의 바람과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의해 비로소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시설수용 장애인을 중심으로 그 사태의 심각성과 대안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조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일반 재가여성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드러내길 꺼려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그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등이 부재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즉 재가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논의할 입장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결국 재가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문제는 전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실태와 장애인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득이하게 시설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을 중심으로 현황, 특징, 문제점, 발생원인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시설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 부분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2) 시설수용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

-시설문제연구회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1) 현황

가정에서 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권익을 최후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이 이러한 원칙과 많이 동떨어져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까지 일컬어지고 있음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사실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오래전부터 폐쇄적 운영의 길을 걸어온 대개의 복지시설에서는 수시로 수용자에 대한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경우는 성폭력과 겹하여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과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설수용자에 대한 드러난 성폭력 현황은 시설문제연구회의 조사에 의한 다음의 표에서 드러난다.

유의할 점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설내 성폭력은 시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의 [표 1]에는 그중 그나마 공론화된 몇몇 사례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1] 장애인시설내의 성폭력 실태

| 시설 항목 | 경기 S학교 | 충남 S선교회 | 충북 S2원 | 전북 H학교 B원 | 전북 J학교 B원 |
|----------|--------------------------|-------------------|----------------------|------------------------------------|-------------------------------|
| 공론화시기 | 90년 | 90년 | 92년 | 87년 | 91년 |
| 가해자 | 세든학생 | 대표(40년) | 재활기술과장 (62세) | 교사(57세) | 원장아들 (20세) |
| 피해자 | 중학생(16세) | 원생(21세) | 원생(21세) | 원생다수/보육사 | 학생3명 |
| 제보자 | 피해아동의 어머니/보육사 | 자원봉사자(41세) | 보육사 10인 | H학교교사/졸업생/B 직원 | 양호교사/J학 교교사 |
| 대책위여부 | | | 공대위 | 공대위 | 공대위 |
| 기타비리 | | 재정/폭행 | | 살인, 암매장, 아동유기, 학대, 재정비리 | 가짜학생, 식단 열악, 비인간적 대우, 교육환경 열악 |
| 구속여부 | 구속 | 구속 | | 구속(공금횡령혐의) | |
| 결과 | 창피해서 문제못 삼겠다는 부모의 태도로 종결 | 징역 6개월 | 피해아동 어머니가 고소취하 |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경과, 당사자 고발없음 의 사유로 무살됨 | 증거불충분 |
| 비고 | | 피해아동을 아버지 가 테리고 감 |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이 있었다는 지적 | | |

(2) 특징

시설내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대체로 자기방어능력이나 범죄인지능력이 약한 여성장애인 또는 아동이며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 이사장, 시설장, 특수학교 교장, 목사 등과 같은 최고 운영진으로 피해자에 대한 막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건의 공개가 이루어지기 극히 어려우며 공개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의 한계로 인해 직접 공개되지는 않고 다른 대상(예컨대 자원활동가, 보육사, 양호교사 등)에게 호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이한 사실은 호소대상이 시설직원보다는 자원활동가에게 주로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3) 문제점(대처과정과 관련하여)

시설내 성폭력은 공론화된 이후에 혹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시설을 구성하고 있거나 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람·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피해자

⑦ 친고죄적용상의 문제

'성폭력 특별법'은 장애인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아동들을 배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수용 여성장애인(아동)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데다가 친권자도 없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이들의 친·인척은 시설운영진에 대하

여 ‘채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소하기도 힘들고 일단 고소를 제기한 후에도 취하하는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증거능력

사회적 대처 능력이 약한 시설수용 여성장애인의 경우 심리과정에 있어 진술하는 과정과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와의 부딪힘은 매우 큰 후유증을 남기게 마련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증거능력 자체를 가질 수 없거나 의심받고 있으므로 사회적 위력을 가진 가해자측에 의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반격을 받기가 쉽상이다.

따라서 의사증거능력이 약한 어린이나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 대리인 제도,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

㉢ 사건화된 후 거취문제

시설은 족벌운영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가해자가 구속된다 하여도 그 친·인척이 시설운영의 핵심에 있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삶은 그야말로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오히려 더욱 심각한 폭력(신체적, 정신적을 망라한)을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건화된 직후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 피해보상의 소홀함

대개의 시설 성폭력 사건들은 피해보상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었다.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단절, 피해자가 갖게될 부담감, 대책위의 역량의 한계 등의 원인에 의해 법적으로 무지하거나 법적 대응이 아예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가끔 피해보상으로 사건을 무마시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사건의 무마로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후의 생활기반 및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장애 치유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단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보자 (혹은 고발인)

앞에서 지적한 데로 제보자의 대부분은 보육사와 자원활동가이다.

즉 이들은 시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시설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 한 후 이들은 ‘패션죄’에 의해 직위해제, 시설출입금지 등의 조처를 당함으로써 활동근거를 잃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해당 시설 뿐만이 아니라 관련 시설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파렴치한 범죄사실을 사회에 알린 정의로운 행동의 댓가는 활동근거 또는 생업을 잃게 되는 무거운 부담으로 주어지게 된다.

한편 보육사와 봉사단체의 활동지 상실은 대개 초기에 나타나므로 사건의 객관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전체 시설수용인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시설내 성폭력의 공론화 및 시설정상화에 매우 큰 장애로 작용한다.

③ 가해자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과거의 직위로 돌아온 경우는 희박하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시설운영의 주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우기 고소취하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성폭력에 관한 대개의 사건에서 나타남)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과거의 직위를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 정부

성폭력을 비롯한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발생시 행정관청의 최대 관심사는 사건의 규명과 정확한 수습이 아니며 사건의 은폐·축소와 이에 대한 책임추궁의 탈피다.

충북 S2원의 경우 보육사를 회유하는 데 C시청 직원까지 나선 것이 뚜렷한 예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음모적 노력에 의해 해당관청이 책임추궁을 받은 적은 지금까지 어떤 사건에도 없었다.

(4) 발생원인

시설내 성폭력의 발생은 다음의 7가지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① 시설의 폐쇄적 구조

② 행정관청의 사전 지도 감독이 전무함

③ 성폭행 사건발생후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묵인·방조

④ 열악한 근로조건에 의해 시설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전예방(지속적인 관심, 성교육 등)이 불가능함

⑤ 친·인척으로 된 직원구성에 의한 사건 은폐 : 시설장에서 부터 총무와 보육사까지 친인척으로 구성된 족벌구성은 성폭행 사건 발생시 그 사실의 외부노출을 어렵게 하고 사전담합등이 이루어져 사실내용을 변경, 왜곡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⑥ 시설장들의 자기정화 노력의 부재

⑦ 시설장들의 시설사유화 의식 : 시설장의 사유화 의식은 성폭행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시설내의 문제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유화 의식의 팽배구조는 자신 스스로의 재산으로 범인을 설립한 경우 주로 나타난다. 결국 시설은 시설장의 것이라는 사유화의식은 시설에 보호되어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자신의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함부로 다를 수 있다는 극히 위험한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자신의 것은 성적희롱의 대상으로 삼아도 무관하다는 비윤리적인 생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사전예방차원에서의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의 필요성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교육, 가정 등에서 뿐만이 아닌 관습적인 차별까지도 철폐되어야 한다.

이를 세분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는 법적·제도적 제재조치의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기해자 처벌의 사법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장애인의 인권유린이 정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공론화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사건자체에 대한 일회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적 규제장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 성폭행사건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의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근본적으로 성폭력의 발생요인을 척결함으로써 폭력을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잠재적 피해자까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사전예방노력은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인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의미하며 이렇게 볼때 국가·사회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기회 제공의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2) 국가의 과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일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① 성폭력특별법이 실효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하여야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정을 확보하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의 온상이 되고있는 시설사유화를 막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주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여성장애인인 국민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여성장애인인 차별받지 않도록 잘못된 법적·제도적 모순 및 사회관습을 척결하여야 한다.

⑤ 각종 가입된 국제협약 및 인권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예컨데 각 사회단체 또는 시민모임의 국제대회 참여 지원).

3) 사회단체의 과제

① 단체 및 각종 모임의 조직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는 이제 더이상 여성과 장애를 이분하여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권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한 단체 또는 모임을 조직,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② 실태조사 실시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여성장애인문제에 대한 사회인식을 활기시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인권유린 사례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③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상담 실시

제도권 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적극 실시하여 여성장애인(아동)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제 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여성 및 장애인 단체는 활동력을 강화하고 대정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단체와의 연대 및 국내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모색,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10일 북경에서 개최될 제 4차 세계여성대회에 대해 주목하고 여성장애인분과의 우리측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⑤ 법적 실효성 담보를 위한 지속적 운동 전개

4)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과제

이상과 같은 국가·사회적 과제와 함께 여성장애인은 이제 스스로의 한계를 벗고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로 나서야 한다.

즉,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리와 주장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뇌성마비장애인 강간사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권나양

이 글은 1994년 1월에서 1995년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들어온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 사례로 여성장애인들이 어떻게 상처를 입고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1. 상담기간 및 방법

상담은 1994년 11월 29일, 11월30일, 12월 6일의 세차례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졌다.

2. J양 신상에 관한 소개

J양은 현재 24세인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부모와 오빠와 같이 살았으나 집에서 나와 장애인시설에서 생활을 하였다. 그 후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것이 싫어서 조용히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장애인시설로 옮겼고, 그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3. 사례 개요

J양은 처음 상담소로 “성폭행 당한 후 마음가짐은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을까요?”하고 전화로 물어왔다. 비교적 차분하게 자신의 문제를 물어왔던 J양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 그녀는 부모와 오빠와 함께 살았고, 커가면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이나 자신의 몸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다. 그러나 생리는 왜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를 엄마에게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런 건 몰라도 돼”라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오히려 생리는 어른이 돼가는 거라고 축하받았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막상 자신이 경험했을 때는 전혀 울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이렇듯 그녀는 제대로 된 성지식도 갖지 않은 채로 집을 떠나 장애인시설로 옮기게 되었다. 그 곳은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던 그녀는 소규모로 가족처럼 생활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설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J양은 처음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한 남자를 알게된다. 한번도 남자와 데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J양은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를 무조건 믿게 되었다. 그러나 J양이 자고 있을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후 1년간(93. 3 - 94. 3) 자의 반 타의반으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가해자는 그녀를 멀리하게 되고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그 곳을 나왔으나 마땅히 갈 곳이 없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견뎌내기 힘들었던 그녀는 다시 나와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내년 1월이면 재혼을 하게 된다. 그녀는 지금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이다.

4. 구체적인 호소내용

1) 가족들에 대한 분노 - 부모: “네가 그렇게 당했으면서 책임지라고 그러지 왜 떠나 보냈느냐”

오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른다.

2) 주변의 따가운 시선

3) 매일밤 성폭행 장면이 꿈속에 나타남

4)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5. 사례분석

J양과 같은 장애인들의 경우는 일반인들의 성폭행 피해에서 나타나는 특성들(분노, 공포, 순결상실감, 불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특성과 증상들

1) 강간 피해의식

2) 성에 대해 스스로 관심억제

3) 가족에 대한 배신감, 소외감

4) 가해자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

6. 조언내용

1)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로 써보자. 글로 쓰는 것이 어렵다면 녹음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자. 그리고 상담소로 부칠 것.

2) 본인이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보기 위해 노력.

7. 문제점

1) 장애인 성폭행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었다.

2) 가족들과 함께 논의하면 좀 더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되었을 텐데,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함.

3) 신체적인 장애로 면접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 큰 제약.

8. 제언

J양의 경우를 통해 볼때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는 피해여성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고 판단된다. 일반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2.2%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실상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의 사례를 통해 판단하건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해올 경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대책마련과 함께 그들의 실상을 사회에 알려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일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장애인 구타사례

정춘숙(한국여성의 전화 상담인권 부장)

내담자는 42세로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다. 남편은 목수일을 하고 있고 아이가 두명이 있다.

내담자는 15세때 뇌염을 앓아서 5개월 동안 누워 지냈다. 그 후로는 거동이 불편하여 학업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내담자는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이 자기는 대학생이라며 줄기차게 따라다녀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 시댁에서는 몸이 성치 않다고 냉대를 해서 친정에서 방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 내담자의 남편은 직업도 없었고 학력도 속였으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내담자는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내담자는 결혼 후 자신이 파킨스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담자는 아이를 낳고 나서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어 걷기가 매우 힘들고 언어장애까지 왔다. 현재 내담자는 걷기가 힘든 상태이고 말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내담자는 남편이 기물을 다 부수고 전화통으로 머리를 내리쳐도 피할 수도 없어 그냥 맞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내담자의 남편은 내담자를 때려서 밖으로 내쫓고 사업을 한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만들어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는 내담자의 친정에 돈을 요구하거나 내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며 내담자를 괴롭혔다. 내담자의 남편은 내담자가 장애인이라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했고 요즘 시행되는 10부제도 자기가 해당되는 날이면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산다. 평소에는 물론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다. 불법주차를 해서 7만원 짜리 벌금딱지가 붙은 것을 장애인 차량이라고 확인을 하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내담자가 시장을 보러 가도 남편은 차 안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고 내담자가 병원에 약을 타러 가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서 데려다 주지 않았다.

내담자가 여성의 전화에 상담을 했을 땐 내담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담하기 전날에도 심하게 구타를 당했지만 몸이 불편한 내담자는 혼자 여성의 전화에 올 수도 없었다.

내담자의 어눌한 말투와 그로 인한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함은 상담을 어렵게 했다. 내담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매맞는 여성들의 피난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그쪽에서는 오면 오히려 고생이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여성의 전화 상담실로 온 내담자의 전화를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받았다. 내담자에게 자신을 데리고 여성의 전화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자 아들이 있다고 했다. 내담자의 아들에게 여성의 전화의 위치를 알려주고 내담자와 함께 오도록 했다. 내담자는 '쉼터'이용 일주일만에 남편의 사과와 각서를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내담자가 '쉼터'를 이용했지만 여성의 전화 '쉼터'는 정상적인 여성들이 구타를 피해서 왔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고 함께 집안일을 하는 등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내담자는 자신이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미안해 했고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쉼터'에 오래 있을 수 있을 것이었다고 얘기했다.

내담자는 말을 잘 못하는 자신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에 상당히 고마워했다. 이 사례는 여성장애인의 상당히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해서 남편이 구타를 해도 피할 수 없어 그냥 매를 맞아야 하고 독립을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음으로 인해 남편의 구타가 또 다시 있을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장애인이라고 받아주지 않는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국가와 사회적으로 복지 정책과 시설이 너무나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주제발표 1

| 인권 자료실 | | |
|--------|------|----|
| 등록일 | 부류기호 | 사 |
| WS | A4 | 24 |

간접보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신해수 (전주 한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우리 사회의 성폭력의 급증현실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국제형사기구의 통계에 한국이 성범죄율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고,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강간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고율이 2.2%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된 건수 만을 가지고 작성된 통계는 실제 발생되는 성폭력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의 증가현상에 대한 그간의 매스컴의 보도와 학문적인 연구¹⁾, 여성단체들의 주방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의 성폭력 주방운동의 결실로 1993년 12월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고 그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성폭력의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게 되었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²⁾ 여성운동의 활성화로 성폭력의 문제는 이제 UN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나 장애인들 모두에게 있어서 자극적이고 초보적인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성장애인의 인권 전반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한 부분으로서의 성폭력의 문제는 더욱 생소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장애인 자신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이나 교통권마저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을 논하는 것이 너무 부분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으로 피해를

으로서 성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적 접근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성격과 연결시켜 분석하기로 한다. 그 다음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며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성폭력특별법의 장애인관련 조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여성운동은 인권운동'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성폭력을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연결시켜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유엔의 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국내, 국제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로 한다.

2. 성폭력의 문제를 보는 기본 전제들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가진 용어이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전의된다.³⁾ 강간이나 강제추행등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전화, 성희롱등의 언어적 폭력, 그리고 사무실에 나체포스터등을 붙여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까지를 의미한다. 성을 매개로 한다고 할 때에는 성파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포함한다. 즉 인신매매나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올란도서, 만화, 게임등)의 제작 및 판매, 그리고 성관계를 전제로 하여 맺어지는 부부사이의 폭력인 아내구타나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 아내강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를 논 할 때는 위와 같은 넓은 의미의 성폭력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성추행이나 강간만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정안에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회통계와 기제로서의 성폭력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이다. 즉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남성이 여성을 강간할 때 이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고수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폭력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따라 모든 여성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장부인보다는 공장의 여직공이 훨씬 더 빈번히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이 다른 집단보다 더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취약집단이다.

3. 성폭력의 사회구조적 원인

1)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우리사회에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의 봉건제 가부장제 사회를 지배한 것은 유교의 위계질서였다. 장유유서, 남녀유별 등을 기본으로 하는 유교사회는 남녀구별뿐만 아니라 남녀차별의 사회였다. 남녀의 역할이 다른 뿐만이 아니라 남녀의 위치가 '하늘'과 '땅'의 차이로 인식되는 남녀불평등 사회인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는 성(sexuality)에 대해서도 남녀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즉 남성에게는 성이 적극적, 허용적이고 여성에게는 소극적이고 억제해야 할 것으로 되어 성의 이중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영웅호색'이라는 용어는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남성의 바람직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정절을 지키는 것이 강요되었다.

이처럼 남녀에게 다른 성의 이중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두 부류로 나누어 지게 된다. 즉 한 집단은 정절을 지키는 양가집의 정숙한 여성이고, 다른 한 쪽은 남성 기원이 외국에 꽝녀로 바쳐졌다가 다시 귀국한 여성들이 정절을 잃었다 하여 가족이나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은 정절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 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부장제적 전통위에서 자본주의의 도입은 대량적인 여성의 상품화를 초래하였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대량생산한 상품(물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이윤추구이다. 이 과정에서 상품화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람의 성도 상품화한다. 그냥 자본주의 사회라면 여성의 성뿐 아니라 남성의 성도 똑같이 상품화 되겠지만,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의 성에 비해 여성의 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상품화되는 것이다. 매매춘의 종 가, 여성의 상품화된 광고, 포르노적 영화, 비디오, 만화의 중가등은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현상이다.

2) 한국의 경제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그러나 여성의 성의 상품화의 정도는 각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다 아는 대로 30여년의 매우 짧은 기간에 급속도의 성장위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 주도 수출 중심적, 대외 의존적, 과정적 발전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왜곡된 경제성장과정에서 부산물로서 나타난 것 중 하나는 향락산업의 증대와 성적 서비스를 파는 여성의 증가이다.⁵⁾ 각종 향락업체에서 성적 서비스를 파는 여성이 증가한 것은 외국인 상대의 기지촌 매춘, 기생판광, 외국 바이어 접대등의 허용과, 기업의 접대문화, 그리고 출부들의 향락산업에 대한 투자와 팔세로 향락업체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된 경제구조 때문이다. 성을 파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에게 제한된 취업기회로 인해 젊기만 하면 다른 직종보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있다.

어느 자본주의 사회나 향락산업에서의 여성의 상품화는 존재하지만 한국은 그 과정이고 왜곡된 경제성장과정으로 인해 다른 사회보다 향락산업의 크기가 단시일내에 팽창하였고, 성 상품화의 정도도 급증했다고 할 수 있다.

3) 성 상품화와 성폭력

여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는 남성은 여성의 인격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텔레비전의 광고에서, 거리의 벽보에서, 음란잡지에서, 또 술집에서 남자들은 끊임없이 상품화된 여성을 보게 된다.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해야 하는 여성은 또한 남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남성들의 눈에 맞는 옷차림과 행동을 하게 된다. 여성의 상품화가 만연된 사회는 이미 사회환경이 남성의 성적 충동을 끊임없이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유발된 성충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가는 그 사회의 가치와 행동양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강간이 쉽게 저질려질 것이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세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여성은 더욱 쉽게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진 흐름이 있지만, 아직도 가부장제 사회의

성의 이중기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정절이메을로기준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다. 형법에서 강간은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강간당한 여성은 폭력의 피해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인식되고 이는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피해자 여성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또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거나 같이 술을 마신 후에 강간당하는 여성은 성충동을 유발하거나 정조관념이 느슨한 여자로 비난을 받고, 강간의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인식된다.

성의 상품화,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의 성윤리, 폭력이 허용되는 사회--이것이 변화하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구조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4. 성폭력 특별법과 여성장애인

1990년 봄부터 한국여성의 전화에 의해 시작된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은 곧 김부남 대책위원회, 대구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등 3개 단체를 더 포함시켜 연합운동으로 발전되었다. 1992년에는 24개 여성단체와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성폭력추방을 특별사업으로 채택하고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성폭력특위)」를 구성하였다. 성폭력특위에는 여연의 회원단체 7개 단체와 5개의 외부단체등 12개 단체가 연대하여 1993년 말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이중의 한 단체로 가담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거의 4년에 걸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은 여성계에서 제안한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결말이 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성폭력범죄를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친고죄의 유지,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 여전히 피해자의 행동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 범죄 유형에 있어서 성희롱등 여러가지가 누락되어 있는 점, 그리고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조치가 미흡한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⁶⁾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에서 "신체장애로 향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된 것은 일부 진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명문화하여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풍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조치, 피해자 대리인 제도등이 특히 장애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필요하나 보장이 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이 여러 면에서 대단히 미흡하더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이 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고율을 2.2%에서 우선 20%까지라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비점은 법을 윤용해 나가면서 앞으로 개정운동등을 벌여야 할 것으로

로 생각된다.

5.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유엔의 활용

1) 민간단체와 유엔의 관계

시민운동의 힘이 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권리 요구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증대되었다. 또한 국가의 조직체인 유엔에도 민간단체들의 목소리가 90년대 들어와서 더욱 커지게 되었다. 92년의 리우환경회의, 93년의 세계인권대회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각종 유엔대회에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또 유엔총회에서도 민간의 시각과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정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앞으로도 95년 3월의 세계정상회의, 9월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 두 유엔대회에 어떻게 민간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인권단체, 여성단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계의 지구촌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이런 유엔대회를 통해 외국, 타지역의 사람들과도 연대하는 것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과거에 비해 민간단체들이 유엔을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해졌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유엔의 기준을 알고 국내의 인권의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여성장애인의 이중고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며 동시에 여성인기 때문에 이중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장애인으로서 당하는 차별에 덧붙여 또한 여성인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 여성의 불리한 사회적 위치라는 또 다른 요소는 고려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여성의 문제를 논할 때에도 장애인으로서의 여성은 주변적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여성의 특수한 문제는 유엔의 「인권과 장애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지적한 대로 사실상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⁷⁾ 여성에 관한 연구문헌들은 여성차별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별 연구가 없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다른 몇 안되는 연구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제의 일부분으로서 다루고 있다. 성과 장애여

부는 두 가지의 독립된 변수로서, 한 사람에게 겹쳐서 나타날 때 서로를 강화시켜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하게 작용되게 된다.⁸⁾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2억 5천만명 이상의 장애여성이 있으며, 개발도 상국의 장애인의 4분의 3은 여성이고 아시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65%에서 70%에 이르는 대부분의 장애여성들이 농촌지역 거주자이다.⁹⁾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어린이, 그 중에서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어린이일 경우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된다.

3) 유엔의 장애인인권, 여성인권의 기준

여성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이나 여성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행사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런 권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25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합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직하거나, 질병을 앓거나, 장애를 입거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고령이 되었을 때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여건속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밀줄 추가).

동등한 권리에 대한 원칙에 관해서는 세계인권선언이 기본이 되고 있다. 즉 제1조는 “모든 인간은 ...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는 “누구든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에 구애됨이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덧붙여 2가지의 국제협약이 인권논의에 가장 중요하다. 그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전자의 협약에서는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출산휴가, 적절한 생활수준(의식주포함)에 대한 권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교육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등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후자의 협약은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 비인격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제7조), 사법처리상의 권리(제9조)를 보장하고 있다. 제9조는 특히 정신장애인과 관련하여 입의적이거나 불필요한 구금을 당하거나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17조는 “누구도 프라이버시나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임의의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특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쉽게 침해당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23조는 남녀가 결혼하여 가족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이 권리가 부정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도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25는 공적인 일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에 몇몇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선언, 문서들이 있다. 1979년에 제정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즉 법, 교육, 가정등등에서 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차별까지도 국가가 없앨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1984년에 가입한 이 협약은 국내 법과 똑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특별법 제정, 성폭력특별법 제정등이 이루어 진 것도 이 협약의 압력을 받은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작년에 개최되었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유엔 문서인 「비엔나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에는 여성의 지위와 여성인권에 관한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없앨 것을 선언하고 있다. 풍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 즉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간, 성노예등도 모두 철폐해야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유엔에서의 인권논의에 여성인권의 문제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1990년대 초부터 운동을 전개해 온데 기인한다. 즉 유엔현장이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세계인권대회에서 여성인권의 문제를 모든 인권에 대한 논의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중요의제로 다루어 줄 것의 두가지를 요청하는 청원서 서명운동을 1991년부터 전개하였다. 이 청원서는 1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각국 여성들로부터 15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었고, 한국에서도 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3년2월에 개최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제도를 설치해 줄 것을 전의하였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바탕으로 여성들은 세계인권대회에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여성인권의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즉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재판」이라는 대규모집회를 조직하여 전세계 23개국에서 30여명의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에 대해 직접 증언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하루 종일 개최된 이 재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5개 분야로 나누어, 가정내에서의 폭력,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 사회·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 그리고 정치적 박해를 다룬었다. 한국에서는 김복동 할머니가 정신대피해자로서 전쟁중에 당한 폭력에 대해 증언하여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여성로비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석한 국가대표들을 상대로 여성들이 만든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로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4)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엔의 활용방안

인권위원회에 신설된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의 활용

세계인권대회에서의 폭발적인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여 1994년 1월 31일에 개최한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연구를 맡게 된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에 대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여성들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결의안 발의자인 카나다국가대표와 함께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또한 특별보고관으로 누가 책임자일 것인가도 논의하여 추천하였다.

지난 4월 말에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는데, 스리랑카의 변호사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Ms. Radhika Coomaraswamy)로서 여성운동이 주천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3년간의 임기동안에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의 실태에 대해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고자료를 받고, 그 원인과 결과 및 대책을 밝히는 연구보고서를 내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성폭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서의 폭력도 포함하여--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전의를 제공하여 특별보고관이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제4차 세계여성대회(1995년 9월 4-15일, 북경)의 활용

197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였고, 제1차 세계여성대회가 멕시코에서 개최되었었다. 1975년-1985년의 「유엔 여성10년」동안 1980년에 제2차, 1985년에 제3차 세계여성대회가 있었는데, 1995년은 10년만에 다시 중국의 북경에서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는 1985년에 채택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행동계획」을 채택하는데 있다.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 대해 “특별

한 관심분야”라는 제목밑에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아직도 제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 및 다른 책임을 지고 있는 문제, 지역사회와 직업훈련이나 재활대책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의 침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경대회에서 채택될 「행동계획」은 이미 각 지역별로 초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6월 7일-14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각료회의에서 「아시아·태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초안」이 이미 작성되어 의견수렴의 과정중에 있다. 이 초안에 의하면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전략적 목표를 “여성장애인의 소외와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여성장애인의 관심사가 지역내외 여성운동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안으로서 (i) 학교와 미디어를 통해 여성과 관계된 각종 장애의 원인과 예방법의 교육; (ii)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생산적 인 사회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것; (iii) 여성단체들은 여성장애인들을 단체활동에 포함시켜 모든 장애여성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iv) 지역내외 많은 장애여성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의 분배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⁰⁾ 이것은 대단히 미흡한 내용으로서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경대회에서 채택될 문서에도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관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이 우리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보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인력과 재정면에서 참석하기가 벅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경대회에서 채택될 문서는 앞으로 2천년대의 여성장애인의 지위를 규정하게 될 문서가 될 것이다. 참여하여 운동하는 과정 자체가 여성장애인의 운동성을 높일 수 있고, 채택된 문서를 근거로 하여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

6. 앞으로의 과제-구체적인 제안들

다음의 간략한 제안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보다는 성폭력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 여성운동파의 연대

여성운동은 환경운동과 더불어 80년대 이후 가장 성공적인 사회운동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인권분야에서 성폭력 부분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하였다. 국내적으로 성폭력주방운동의 전개,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성희롱사건에 대한 재판, 울란전화범의 구속 등으로 사회의식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조직적이고

도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보아왔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성운동에 합류하여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단체안에 여성장애인의 독자그룹을 형성하여 여성운동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라도 모일 수 있는 여성들끼리 핵심을 이루고 비장애인 여성들을 지원세력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내에 가칭 여성장애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지원세력을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 및 교육, 상담

간접적, 개별적으로 터지는 시설에서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례만을 가지고서는 사회의 인식을唤起시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에 미흡하다. 조직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하기 힘들면 연구소나 여성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실태조사와 더불어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교육이나 상담도 이미 이를 실시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외회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여성운동과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면 교육과 상담, 정책캠페인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국제단체와의 연대

국내적으로 어느정도 역량이 성숙되어야 하겠지만 국제단체와의 연결도 꼭 필요하다. 외국의 운동사례에서 배우는 점은 전략과 방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점이다. 여성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단체중 장애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와의 연결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계교회협의회는 금년 6월부터 장애인부서에 한국인 여성장애인자를 실무자로 채용하여 일을 시작하므로 쉽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폭력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행사정책연구원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실영희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한국여성개발원 (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2) Charlotte Bunch and Roxanna Carrillo (1992), Gender Violence: A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ssue,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 3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성
폭력 추방운동 자료집 I, p.3.
- 4한국여성개발원 (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5Heisoo Shin (1991), Women's Sexual Services and Economic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Dept. of Sociology, Rutgers University.
- 6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
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 기자회견 자료, 1993. 12. 20.
- 7Katarina Tomasevski (1993), Women and Human Rights, London & New Jersey:
Zed Books, Ltd., p. 81.
- 7United Nations (1993), Human Rights and Disabled Persons, World Campaign for Human
Rights Study Series 6, New York, p. 19.
- 8일 책.
- 8UN ESCAP, Preliminary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Asia and
the Pacific, 1/4/94, pp. 34-35.

| | | | |
|----|-----|----|----|
| 18 | 4/4 | A4 | P4 |
|----|-----|----|----|

'창립 10주년' 29차 토론회

여성 장애우 전국 실태 조사 발표회

값 : 3,000 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In Korea (RIDRIK)

(137-06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전화 (02)521-5364 전송 (02)584-7701

천리안·나누리 : cowalk

일 시 : 1997. 12. 3(수) 오후 4시 ~ 5시 30분

장 소 : 서초구민회관 강당

주 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0주년’ 29차 토론회

여성 장애우 전국 실태 조사 발표회

일 시 : 1997. 12. 3(수) 오후 4시 ~ 5시 30분

장 소 : 서초구민회관 강당

주 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순 서

사 회 : 이예자 (여성국장)

축 사 ————— 신낙균(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정무제2장관)

발 표 자 ————— 채은하(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여성분과 '벗장' 위원장
/ 전주한일신학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양인순(보건복지부재활지원과장)

신혜수(한국 여성의 전화 대표)

김경화(대구여성장애인연합회장
/ 효성가톨릭대 여성학과 교수)

「여성장애인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른
디안 마련을 위한 제안

체 은 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빚장을 여는 사람들’
위원장)

1. 의식 조사의 의미 및 목적

장애인권익연구소는 약 두 달간에 걸쳐(1997년 8월 12일-10월 10일) 18세 이상의 한국의 재가(在家) 여성 장애인 719명(1급-29%, 2급-38.3% 로서 50%이상의 중증장애인이며 지체 장애인 66.5%, 시각 장애인 15.6%, 청각 장애인 17.9%이다)의 차별과 현실에서 느끼는 다양한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 전문 기관인 「파인더리서취」에 위탁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의 차별 의식과 욕구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사회에 알리며, 나아가 정부나 사회의 정책에 반영케 하여 여성장애인들의 현재적 삶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청각 및 시각과 지체 장애인들을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에 참여시켰다는 점과 질문 항목이 교육, 취업 및 직업 생활, 결혼, 폭력, 경제력 및 사회적 요구등 다양한 데까지 이르러 여성 장애인들의 현재의 삶의 상황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한 것이 이 조사의 중요한 의미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의식 조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95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45.7%인 47만여명이 여성 장애인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됨). 몇 가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95년과 96년에 걸쳐 여성 장애인의 차별(가정내 차별등)을 초점으로 조사한 것이 한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진 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전국적이지 못했고 그 숫자(200명 안팎)도 한정되어 있어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제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연구소에서 이번에 719명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과 욕구과 같은 문제를 조사했던 것은 앞으로의 실태 조사와 정책 결정을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리라 여겨진다. 앞으로 이와같은 조사가 앞으로의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좀 더 확대된 범위와 더 상세한 문항을 갖추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2. 조사의 한계

이번 조사는 가능한 한 취약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여러 한계들이 있었다.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워크숍(97.11.15 연구소)에서도 언급된 것이지만, 이번 조사는 비례 추출이 아니라 편의 추출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적인 여성 장애인들과의 분포에 대해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편의 추출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여성장애인들이 무작위로 조사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주로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결과가 여성 장애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차별 의식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나왔던 점이다. 그럼에도 조사자들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들과의 접촉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경우나 반발이 많았고 이는 아직도 여성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신체적 장애는 상당한 개인 및 사회적 장해(障害)로 인식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차별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차별에 관한 의식을 조사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도 개인적으로 매우 차별받고 있으나 자신의 생활에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고, 정부나 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정부나 사회에 대해 기대나 희망을 전혀 갖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 점은 지금까지 정부나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취해왔던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단순히 넘길 수 없는 점으로 여겨진다.

한가지 뒷불일 것은 이번 조사에서 정신 지체 장애인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가족들이 정신 지체 여성들을 대신하여 응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과 같은 가족간의 미묘한 문제들을 언급하기가 매우 곤란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조사가 별도로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의식 조사를 기초로 한 여성 장애인의 욕구와 제안

1) 교육 조사 결과와 제안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정, 직장, 사회,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9.49%의 응답자가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20-30대의 여성 장애인들이 사회의 심각한 차별을 호소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들의 소외와 차별이 현재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년 교육이나 직업 교육과 고용(719명 응답자 가운데 530명이 무직자(73.7%)였다)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 혜택과 고용에 대한 욕구는 개인이나 가정보다 사회와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있을 때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교육과 고용의 기회는 남녀 구별없이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겪고 있는 차별이니 만큼 여성 장애인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부장적인 문화권안에 살고 있는 한국의 가정과 사회는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남성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으므로 여성들은 자연히 교육과 고용의 기회에 있어서 남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그 정도는 훨씬 심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가정에 남아가 지체 장애인다면 부모는 업어서라도 정규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여아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남자는 가장으로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기회를 가능한 한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들의 경우 부모들은 그들을 집안에 머물게 하거나 간단한 기술을 가르치는 쪽이 훨씬 더 편편하다. 본 조사에서 48.6%의 응답자가 중학교육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왔지만 이미 이 조사의 미비점으로 지적했던 주로 밖에서 활동하는 여성 장애인들을 조사 대상으

로 삼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의 여성 장애인들의 평균치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1996년 230명을 대상으로 장애우권익연구소가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무학이 41%였다(1995년 통계청이 조사한 「한국의 사회지표」 역시 초등학교 교육 이하를 받은 남성 장애인은 47.8%이고, 여성 장애인은 이보다 훨씬 높은 78.6%이다; 비장애인 남성은 23.3%인 반면 비장애인 여성은 43.0%이다). 빗장에 참석하는 여성장애인들의 학력에 있어서 무학이 상당수임을 보아서 특히 훨체어를 타는 중증 지체 장애인 여성의 경우 학교 출입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검정고시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찾는 여성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보 부족과 교재, 이동의 문제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다녀야 하는 학원 역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들이 교육의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행정과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복지기관에 마련되어 있는 교육 기회나 직업 훈련과 같은 기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정보 부족과 교통편등으로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 현재 복지관들과 그들의 프로그램과 이용방법과 같은 안내 책자가 분기별 내지는 연도별로 각 장애 기관과 단체에 배포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기관 책임자들은 다 준비되었으니 장애인들이 알아서 찾아 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필요와 욕구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과 시설 설비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자원봉사자 및 차량 제공등)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이를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여성 장애인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으면 정부와 시설들은 이를 경청하고 이를 시행한다는 신뢰를 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가지 주지할 것은 장애 복지관이나 시설물들은 대체로 남성 장애인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의 이용 부족과 불참여에 대한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맞물려 「여성 장애인의 집」과 같은 여성 전용 종합 복지관을 제안해 본다. 이는 성년이 지나 일반 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숙식(집단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살려서)을 제공하고 나아가 직업 훈련에 이어 고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합 복지관이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이 안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결혼의 기회와 살림과 임신과 육아와 같은 여성 특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지관이다. 물론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쉼터’와는 별도로 여성 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자기의 삶을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복지 기관이다.

한편 여성을 위한 일반 쉼터를 개설했을 때 이는 모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쉼터를 기획하는 과정에 여성 장애인의 참여나 배려가 없어 여성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쉼터를 만들 때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 여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 여성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자의 배치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그리고 지체 장애인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 장애인만의 특별한 쉼터도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일반 쉼터에 여성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편의 시설들이 취해지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여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할당제 실시도 하나의 방안이라 여겨진다.

2) 직업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와 제안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18세에서 50대에 이르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여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이상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30% 취업자 역시 단순직이나 생산직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소득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느끼고 있다. 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것은 남녀를 떠나 모든 장애인 차별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차별의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 보장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간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일반 남성과 여성, 심지어 장애를 가진 남성에 비해 여성 장애인의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경제 활동이 매우 부진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이번 조사 대상자 가운데 539명(75.0%)이 개인 소득이 없다고 응답했고, 단지 56명(7.8%)만이 75만원 이상의 수입원을 갖고 있었다). 1994년 현재 일반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7%이고 장애인은 43.9%일 때 남성장애인은 57.7%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27.7%로 남성장애인의 1/2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 장애인의 상당수가 독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이번 조사에서 30대의 여성 224명 가운데 30%가 미혼이다) 여성 장애인들의 다수는 가족이나 누군가(독지가)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생활은 독지가(28.6%),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23.1%), 가족(9.7%), 종교단체(3.8%)의 도움순으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여성 장애인의 '일 할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자립자금대여-1천만원, 전세주택자금-1천만원 대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을 한다거나 보증인을 세운다거나 또는 대여금을 제한시켜 남성 장애인 중심의 소득 보장 대책으로서 이를 활용하는 여성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현재 여성 장애인의 일 할 권리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사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 공단」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을 고안하고 계발시키고 '여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책임 부처가 생겨 좀 더 여성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전문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공단이 단지 남성 장애인의 취업만이 아니라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예민함 그리고 인내 그리고 전문성을 백분 발휘할 수 있는 작업들을 만들어 내고 이를 소개하여 여성 장애인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안한다.

3) 가정 내 조사 결과 및 제안

여성 장애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독신으로 살고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살림과 육아 때문에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살림과 육아가 남녀 분담제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여전히 아내와 엄마의 역할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의 경우 이를 위해 가정 도우미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한다. 즉 한달 동안 일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제가 있다고 한다. 가사나 육아나 외출을 위해 자신에게 할당된 쿠폰제를 사용하고, 가정 도우미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금료를 받는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자원봉사제도이든지 국

가의 도우미 제도이든지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될 때 여성 장애인들이 살림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제도는 여성 장애인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혼자 사는 장애인 남성과 노인 가정과 같은 곳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남성보다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데 있다. 이는 다른 가족원이 취업해야 할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 가사라는 직무가 여성에게 특별히 부과되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을 위한 가정 도우미 제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여성 장애인들도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적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1995년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장애인 미혼 여성은 60.5%인 반면 비장애인 미혼 여성은 50.7%, 30대의 장애인 미혼 여성은 13.7%이고 비장애인 미혼 여성은 4.1%이다). 농촌 총각만이 이 사회가 돌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들에게도 결혼이든 독신이든 다양한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정 도우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94년 성폭력특별법이 새로 제정되고 올해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각종 차별적 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 권리문제 연구소는 98년에 이 법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중에 있다.

4. 정책 제안 및 반영의 어려운 점

이 조사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15일 가진 워크숍에 정부 제2장관실의 장애인 담당자와 보건복지부 장애인 재활지원과장이 참석하였다. 전자는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부분을, 후자는 장애인 측면에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 워크숍에 참여한 것이다. 이들의 제언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된 특별 문제가 돌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 문제 전반에 해당된 문제가 여성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반에 걸친 문제가 여성 장애인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런 조사가 여성 장애인만의 특별한 문제를 들춰내고 정책까지 반영하려면 여성 장애인 특유의 문제가 발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여성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이중의 장애를 겪어야 하는 위치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까지 이르려면 여성 장애인으로서 특별히 겪어야 하는 고유한 영역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으로부터의 소외나 실업은 남성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겪는 일이다. 이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여성 장애인들이 고유한 영역으로 특수화할 수 있겠는가?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요구해야 할 중요한 안건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다음의 조사는 비장애인 남성과 여성과 비교, 장애인 남성과 여성과 서로 비교하는 일이 여성 장애인의 문제를 구체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임이 인식되었다.

5. 나오는 말

이번 의식 조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위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성 장애인의 집」 : 이것을 제안하는 데 있어 새로운 건물 내지는 복지관을 새로 건립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어느 복지관을 여성 장애인 종합 복지관으로 전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가 수렴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도 있으며, 어쨌든 여성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 교육 연령을 지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직업 교육 그리고 나아가 고용의 기회를 갖게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가사와 임신과 육아와 아울러 상담까지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독립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돋보기 하는 기관이다.

2) 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제안 : 기존의 「장애인 고용 공단」이 여성 장애인을 적극적인 고용 회망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직업 계발과 직업 교육 및 소개까지 할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고용 부처」의 신설을 촉구한다.

3) 가정 도우미 제도 : 특히 결혼한 여성들(미혼 여성 역시)에게 부과된 가사와 임신·육아에 필요한 가정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4) 여성 장애인 할당제 : 여성 그리고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의무적으로 할당되어 여성 장애인의 필요가 욕구가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는 하는 여성 장애인 할당제도를 제안한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들과 정부의 관계 부처 기관들은 여성 장애인들의 욕구와 바램을 경청하여 여성장애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97년 의식조사를 기초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부록)

여성장애인 의식조사 보고서

*여성장애인 의식조사를 위해 설문지 작성, 설문 조사, 결과 보고서 등 (주)파인더조사연구소에서 활동해 주셨습니다.